

# 1. 학교폭력 예방 교육

## 1 학교폭력의 개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2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흐름도]

※ 해당 절차는 『2025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 가. 내 자녀도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나.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 관계를 파악합니다.
- 다.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존중, 역지사지, 준법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 라. 자녀에게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이라도 약자에게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교육합니다.
- 마. 자녀에게 모범적인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자녀에게 친구들이 학교폭력에 가담하고자 할 때, 잘못된 일임을 친구에게 알리도록 지도하고, 잘못된 친구의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친구 간의 의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 4 학교폭력 피해를 알았을 때 대처요령

- 가. 자녀가 폭력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께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 나. 폭력피해가 우려되는 자녀에게는 동반자를 만들어 주고, 등하교 시 가급적 큰길을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 부모님과 동행하도록 합니다.
- 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와 협의하여 공동지도하도록 합니다.
- 라.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는 바로 부모님, 선생님께 알리도록 자녀에게 지도하며, 그것이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과 같음을 알려줍니다.
- 마.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생활지도 및 태도 개선을 위해 힘씁니다.

### 5 학교폭력 신고 방법

#### 가. 교내 신고 방법

- (직접 신고·상담)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거나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
- (신고함) 교내 학교폭력 신고함 설치·안내(신고학생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위치 고려)
- (설문조사)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 부여 및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 실시
-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의 민원 게시판 등

#### 나. 교외 신고 방법

-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 국번 없이 117 및 117센터에 방문 신고·상담
- (경찰청)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범죄 신고 11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
- (학교전담경찰관) 해당 학교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 2. 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교육

### 1 성폭력 예방

#### 가. 가정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방법

- 1) 신체의 구조와 차이 등 성에 대해 자녀와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합니다.
- 2)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 3)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만지려고 한다면 바로 교사나 부모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 4)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 5) 성폭력은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 6) '아는 사람' 이라도 조심하도록 합니다. (성폭력은 주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하고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나.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알려주세요

#####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지키기 위한 방법】

-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고 상대방의 경계도 존중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넘어올 때 싫으면 '싫어.', '안 돼.'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다른 사람의 경계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허락)를 구해야 하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 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 수칙

- 1) 아동 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 성폭력 예방 안전수칙(7가지)
  -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립니다.
  -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2)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 성폭력 예방 안전수칙(7가지)
  - 아동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폭력 위험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반드시 알릴 것을 당부합니다.
  -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고 진심으로 지지해줍니다.
  - 아동·청소년의 피해사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출처: 교육부 누리집 [카드뉴스]>

※ 양육자 콘텐츠 참조: 디클DIGITAL CLEAN(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 2 양성평등

### 가. 성인지 감수성

자두 아빠: “자두야, 밖에서 놀 땀 선크림 좀 바르고 다녀. 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

한복집 할머니: “(자두야)어차피 그 얼굴로 결혼은 무리다.”

자두: 엄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공부 잘해도 못 생기면 결혼도 못하는 세상이라고! 그러게 처음부터 예쁘게 낳아줬으면 됐잖아!”

- <안녕 자두야> 중에서 -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 1)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

- 성인지 감수성은 ‘사람을 여성과 남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성인지 감수성은 개인의 의식으로 의식은 인간의 행동과 언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 성평등 지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한국은 146개국 중에서 105위입니다.
- 성인지 감수성의 소극적 의미로는 성 차별이나 성 역할 고정관념의 문제에 대한 ‘인지 능력’ 혹은 ‘관심과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성인지 감수성의 적극적 의미는 성 차별이나 성 고정관념을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의지와 이를 실천에 옮기는 실행력을 포함합니다.

#### 2)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법

-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평가하면서 자신의 성 고정관념을 성찰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 일상 속에서 성 불평등 단어의 인식 및 개선 노력을 합니다.
-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태도를 갖습니다.
- 성인지적 관점에서 각 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 성평등 관련 책, 기사, 연수, 대화 등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합니다.
-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불리하지 않은 지 각 성의 입장에서 함께 판단하려는 자세와 노력을 합니다.
-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에 갇히거나 여성 혐오와 차별중심 접근을 극복, 각 성의 입장에서 보는 균형잡힌 시선을 갖는 노력을 합니다.

### 나. 가정생활에서의 성 평등 의식

| 가정생활에서의 성 평등성에 대한 태도가 낮은 사람  | 가정생활에서의 성 평등성에 대한 태도가 높은 사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달라,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li><li>- 집안일과 육아 등에서 남성,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책임과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li><li>- 가족 내 성차별에 대해 다소 둔감, 부부 상호 간의 권한 관계에서도 어느 한쪽의 권한을 더 높게 생각</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일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와 육아 등 공동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li><li>- 요리, 빨래, 청소와 아이 돌보기 등의 활동을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li><li>- 가정 내 성 차이를 인정, 부부 상호 간의 권한 관계에서도 평등성을 지향</li></ul> |

### 다. 가정에서의 성 평등 실천

- 1)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합니다.
- 2)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3)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4) 진로 선택 시 남녀영역이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 5) 학업성취나 수행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보다 개인의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6) 어렸을 때부터 딸, 아들 모두 예술, 체육 등을 함께 즐기며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키웁니다.
- 7)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 8) 수줍어하고 침묵을 지키며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여성이 되지 않도록 일깨워줍니다.

### 3. 아동학대 예방 교육

#### 1 아동학대의 개념

가.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 제1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만 18세 이상의 경우는 가정폭력 관련법이 적용되고,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법에 적용되어 처리

나. '아동학대'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아동학대범죄'란?(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의 각 목)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 ▶ (형법)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 ▶ (아동복지법)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범

※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 행위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보다 좁은 개념(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내용

가.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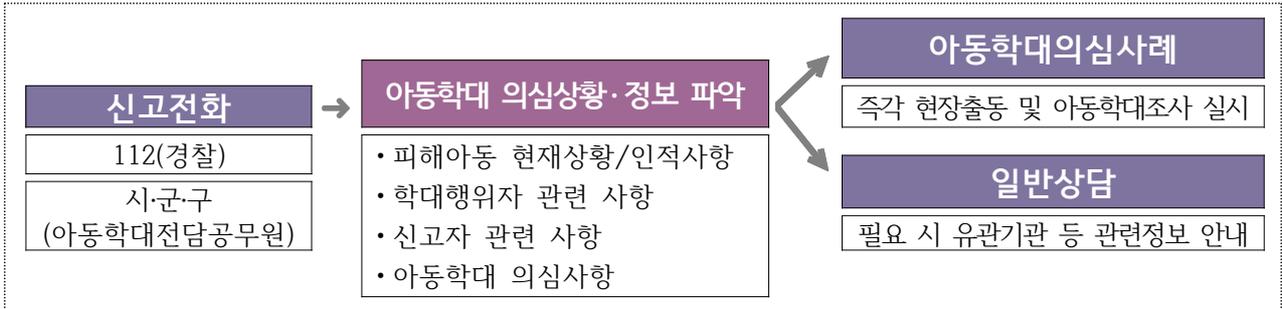
나.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다.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라. (방임 및 유기)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3 아동학대 신고

#### 가.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 흐름도



#### 나. 아동학대 신고자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다.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기관

- 국번 없이 112(전화, 문자)
- 시·도,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
- 모바일앱(아이지킴콜 앱)
- 보건복지콜센터 129-6번(아동학대 상담)
- 아동보호전문기관

- ※ 경찰청으로 신고된 사안(교사 대상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기관의 요청 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 절차 시행
- (해당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 변호사 등이 학교를 방문하여 사안 확인
  - (도교육청) 교사 대상 아동학대 사안 관련 교육감 의견서(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 작성 후, 수사기관에 제출

### 4 징계권 폐지 안내

#### 가. 징계권이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민법 제915조)

#### 나. 징계권 폐지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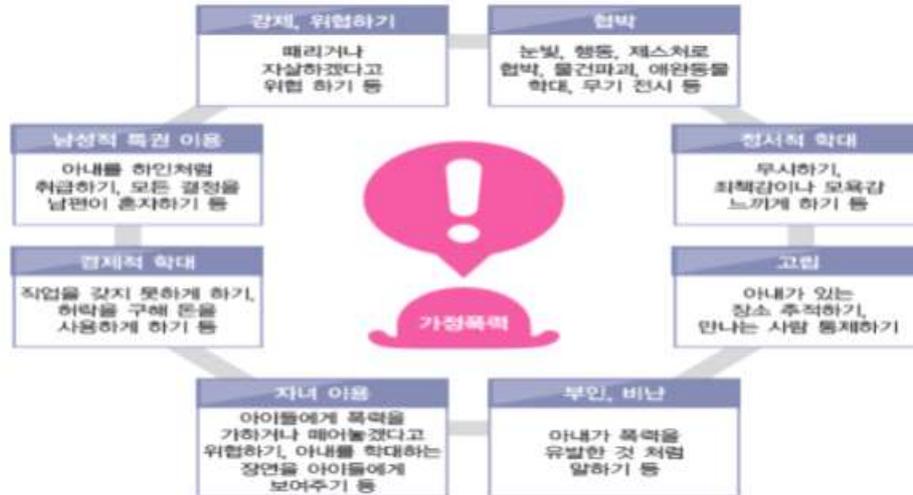
2021년 1월 26일에 폐지되었습니다.

- ※ 아동은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 4. 가정폭력 예방 교육

###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이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2 가정폭력과 아동

<이런 아동이 있나요?>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함
- 비행, 가출, 잦은 결석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어른과의 접촉 회피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자살시도

- 말이 늦고 키가 잘 안 큼
- 화상 자국
- 입이나 눈에 상처가 많음
- 도구 모양이 그대로 나타난 상처
-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영양상태 불량
-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 3 가정폭력의 위험성개념

- ◎ 가정폭력은 또 다른 폭력의 씨앗: 가정폭력 → 학교폭력, 성폭력, 성매매 (가해 학생 대부분이 어린 시절 가정 폭력 목격 경험과 폭력 피해 경험이 있음)
- ◎ 가정폭력의 심각한 악영향
  - 가해자와 정서적 애착관계(가해자에 대한 적개심 표현 못함/과도한 흥분, 감정 절제 미숙/폭력사실을 숨김, 가해자를 두둔)
  - 공포의 재경험(외상 후 스트레스/가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대상 공간에 공포를 느낌)
  - 사회적, 물리적 고립(가해자에게 경제적, 사회적 의존/사회적 독립 두려움/자원 결핍)
  - 가해자 처벌에 대한 불신

### 4 가정폭력 신고☎(국번없이) 112

여성긴급전화(☎1366)나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5.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금지

### 1 공교육정상화법

◆ **정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도록 교육 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법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2014. 3. 11. 제정, 2022. 7. 21. 개정

#### ◆ 「공교육정상화법」주요 내용

-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학교 시험(지필, 수행평가)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을 배운 내용에서 출제
-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행정지도)

#### ◆ 선행교육 판단 기준

| 구분            |  |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
|---------------|--|---|
| 교육과정<br>편성·운영 | 재학생  | 앞서서 편성<br>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
|               |  | 앞서서 제공<br>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
|               | 입학예정학생<br>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   |
| 평가            | 재학생  | 교과평가<br>(지필,수행)<br>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
|               |  | 각종 교내<br>대회   |
|               | 입학예정학생<br>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   |

### 2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Q&A

####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학기를 넘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도계획표를 수정하고 정보공시를 해야 합니다.

◆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교육기부로 운영되는 교과(관련) 프로그램도 선행교육의 규제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기부는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등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 교육기부:기업·대학·공공기관등이보유한인적·물적자원(자원봉사,개인재능,시설·기자재기부,활동지원,콘텐츠제공,프로그램운영)을유·초·중등교육활동에직접활용할수있도록비영리로다양하고수준높은교육기회를제공하는기부유형.

◆ 교과 관련 교내 대회에서도 정규 교과 교육과정의 범위를 앞선 문항을 출제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교과 평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학기를 단위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입학 이전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이후에 다루어야 할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

입학예정학생에 대하여 입학 전에 상급 학교(입학예정학교)의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 초6과 중1, 중3과 고1을 연계한 영어, 수학, 논술 등의 교과 프로그램(캠프 등 활용 포함) 운영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교육과정을 앞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 초등학교 1, 2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영어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외의 활동에 해당되므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 교과를 운영하는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학년 단계에 맞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하면서 영어를 활용한 음악활동(chant나 song) 및 국제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관련 체험활동 등을 선행교육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 6. 인성 · 인권교육

### 1 인권의 개념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이며,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함께 의미합니다.

### 2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 3 우리 가족의 인권지수

☞ 어린이가 체크(√) 해 보세요. ☞

| 내 용 (학생용)                      | 체 크 |   | 비 고  |
|--------------------------------|-----|---|--|
|                                | ○   | x |  |
| 1.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때가 더 많다.     |     |   | ※ ○의 개수를 세어보아요.<br>▶ 3개 이하 : 인권지킴이<br>▶ 4개~7개 : 인권노력이<br>▶ 8개 이상 :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해요 |
| 2. 잘못했을 때는 자주 매를 맞는다.          |     |   |  |
| 3.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다. |     |   |  |
| 4.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     |   |  |
| 5. 형제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이 귀찮다.        |     |   |  |
| 6. 화가 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 표현을 한다.  |     |   |  |
| 7.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신다.       |     |   |  |
| 8. 형제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차별받는다.        |     |   |  |
| 9.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기도 한다.        |     |   |  |
| 10. 가족들 사이에도 비밀은 지켜지지 않는다.     |     |   |  |

☞ 부모님께서 체크(√) 해 보세요. ☞

| 내 용 (학부모용)                        | 체 크 |   | 비 고   |
|-----------------------------------|-----|---|---|
|                                   | ○   | x |   |
| 1. 아이들 앞에서는 부부간에 정중한 언어사용을 한다.    |     |   | ※ ○○의 개수를 세어보아요.<br>▶ 8개 이상 : 인권지킴이<br>▶ 4개~7개 : 인권노력이<br>▶ 3개 이하 :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해요 |
| 2.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는다.   |     |   |   |
| 3. 아이들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는다.             |     |   |   |
| 4.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는다.       |     |   |   |
| 5. 아이들이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   |   |
| 6. 아이들의 의사 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     |   |   |
| 7.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한다. |     |   |   |
| 8. 공부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   |   |
| 9. 아이들의 비밀은 언제나 지킨다.              |     |   |   |
| 10. 가족과 함께하는 일들이 많다.              |     |   |   |

#### 4 학부모 인성교육(공감)

##### ▶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인성 요소(가치) : 자기이해, 나눔, 사회적책임감, 배려, 타인이해, 어울림, 협동, 공동체의식, 존중, 평화, 정직, 자연보호, 공정함, 시민의식, 우정, 책임감, 평화...

##### ▶ 수많은 인성 요소의 전제조건, [공감]

누군가와 같은 입장이 되거나 그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자신도 유사하게 혹은 같이 느끼는 상태

##### ▶ 나는 자녀와 공감하는 대화를 하고 있나요?(체크해보세요)

- 자녀와 이야기할 때 충분히 눈을 맞춘다.
-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먼저 물어본다.
- 자녀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는다.
- 닫힌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을 자주 한다.
- 직면, 명료화 등 대화의 기술을 잘 알고 있다.
- 때로는 문제해결이나 대안보다 감정을 읽어줄 수 있다.
- 미소, 가벼운 포옹 등 긍정적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며 말한다.
- 대화할 때 자녀의 표정이나 몸짓을 살핀다.
- 대화하며 다른 일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
- 긍정적인 단어를 쓰려고 노력한다.
-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잠시 대화를 멈춘다.

## 7. 교육활동 보호

### 1 교육활동보호의 필요

교육활동보호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의 밑거름이 됩니다.

#### 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때 수업의 질이 유지되고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보호의 주목적은 안정적인 수업과 학습권의 보장입니다.

나. 배움과 실천의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내면화·인격화하는 과정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교원은 제자를 사랑하고 학생은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는 학생의 올바른 인격 성장에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다.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선생님이 행복하면 학생이 행복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생지도에 매진할 때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안정된 학교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 [교원지위법 제19조제1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예]**

- 1. 폭행상해: 교원의 신체를 직접 때리거나 밀치거나 멍살을 잡고 흔드는 경우
- 2. 협박: 교원에게 '교직을 그만두게 만든다',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거나 말없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목을 겨누는 경우
- 3. 명예훼손: 다른 학부모들에게 '교사가 특정 학생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과거 징계 사실을 유포한 경우
- 4. 모욕: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거나 비하하는 별명을 만들어 부르는 경우
- 5. 손괴: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며 학교 기물을 망가뜨리는 경우, 교사의 문서나 파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
- 6. 성범죄: 휴대전화로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거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퍼뜨린 경우, 수업 중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 7. 불법정보 유통: 교원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한 경우,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작성한 경우, 교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 1) 동·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또는 분쟁조정
- 2)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

- |            |        |                               |
|------------|--------|-------------------------------|
| ① 학교에서의 봉사 | ② 사회봉사 |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④ 출석정지     | ⑤ 학급교체 | ⑥ 전학      ⑦ 퇴학처분(의무교육대상자 미적용) |

※ 위 조치 중 ③호 특별교육은 학부모도 함께 참여해야 함(미참여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

- |                  |                                  |
|------------------|----------------------------------|
| 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②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 위 조치 중 ②호 특별교육 미참여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교원지위법 제35조제1항)

**3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가.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기: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정교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학교교육이 위협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성교육이나 생활습관 개선, 관계성 교육 등은 가정교육을 통해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교원과 학부모의 관계 재정립하기: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과 학교를 신뢰할수록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가속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되는 바람직한 상호관계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 8.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불법찬조금 근절

### 1 청탁금지법의 이해

▶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 적용대상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① 공직자 등(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② 공직자 등의 배우자, ③ 각종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의 학부모위원을 포함한 민간위원, ④ 부정청탁 및 금품등을 제공한 일반 국민입니다.

#### ◆ 주요내용

(부정청탁 금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금품등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사교·의례·부조의 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워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제공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벌칙 등) ①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와 ②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자에게 벌칙(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 ◆ 위반사례

- 스승의 날에 학생(학부모)이 선생님(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께 선물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선생님의 결혼식에 학생(학부모)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학부모님이 선생님과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교감 선생님께 선물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 허용사례

-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카네이션(꽃)을 드리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입니다.
-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등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학교의 선생님과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이 허용됩니다.(동생이 이전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불가능)

## 2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 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합니다.

## 3 불법찬조금 유형 및 사례

- 각 학급별 대표 학부모들이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한 찬조금품을 학예발표회,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입학·졸업식 등 각종 행사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여 야간자율 학습지도, 교직원 선물·회식 등의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생간부 어머니 또는 어머니회(자모회 등)등이 학교 기자재 및 교재·교구 확충, 교실물품 구입, 시설비 확보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지원하는 사례
- 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의 교육활동 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각종경비를 부담하는 사례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차량운영비,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집행 (지도자 인건비, 수당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은 조성 불가)
- 학부모회에서 일인당 회비를 모금하여 찬조금을 조성하고, 이를 별도계좌로 관리하면서 학생 도시락 및 간식을 제공한 사례
- 학교(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회 조성 장학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 학부모회장 개인명의 별도계좌에 모금하였으며, 학부모회장이 직접 지급 또는 입금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집행한 사례
-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 (1)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유지관리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차량 장기렌탈 비용은 예외)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 학교발전기금 담당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판단
-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 (5)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 9. 다문화교육

### 1 사회 변화와 다문화교육의 중요성

-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 기준 대전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다문화학생은 전년 대비 8.72% 증가하여, 전체 학생의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견과 차별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우리 자녀들이 꼭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세이며 덕목입니다.
- 또한 다문화가정은 지원받는 대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함께 노력하는 동등한 국민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 다문화가정: 국제결혼가정, 이주민가정을 포함하는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정

### 2 가정에서의 자녀 지도 방안

- 다른 나라의 문화도 소중하고 존중해야 함을 자연스럽게 지도합니다.
- 문화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서로를 인정하는 태도를 갖도록 지도합니다.
- 평소 차별과 편견을 가진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갖도록 지도합니다.
- 자신과 피부색, 생김새, 말투 등이 다르다는 것을 놀리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을 얼마나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도합니다.
- 타 문화를 존중하면서 우리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며 자아 정체성을 갖도록 지도합니다.

### 3 학교·교육청 차원의 지원 내용

- 학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등의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 학교와 교육청은 다문화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 (한국어교육 지원) 한국어학급,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한국어 진단-보정 시스템 운영
- (기초학력 지원) 교사와 다문화학생 1:1 멘토링, 대학생과 다문화학생 1:1 멘토링, 통·번역 학습보조인력 지원
- (학교적응 지원) 통·번역 지원, 개인·집단상담 지원, 징검다리과정 운영, 학생 동아리 운영
- (공교육 진입 지원) 다문화학생의 취학·입학·편입학 절차 안내 및 학력심의 지원

### 4 다문화학생 학습, 학교적응 지원자료 제공 사이트



#### ☺ 한국어, 다국어 학습자료

- [모두의 한국어](#)
- [EBS 두리안](#)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 학교적응 지원자료

- [다문화교육포털](#)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10.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 이해

###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알고 계시나요?

#### ▷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 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 ②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됩니다.
- ③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면 안 됩니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면 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 2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 4. 11 시행)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 ○ 차별금지대상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활동에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제18조)

장애인(보조견,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시설물 접근 및 이용을 금지·거부해서는 안 되며,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1.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수칙 안내

### 1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

※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 2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사례

◆ 킥보드 사망 사고 느는데... 안전불감증 여전 (KBS뉴스, 2023. 09. 07.)

◆ 킥보드 피하러다 화물차 전복됐는데... 안 멈추고 '쌩' (SBS뉴스 외 다수, 2023. 10. 11.)

### 3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전동킥보드 면허와 범칙금

#### ◆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반드시 면허 소지

**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연령 16세

**취득 연령**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 ◆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운전 절대 금지

**보호자**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

**범칙금** ◆ 무면허 탑승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 위반 4만원, 인도주행 위반 3만원 등

### 4 학교 교통안전교육 현황

◆ 본교에서는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연 11시간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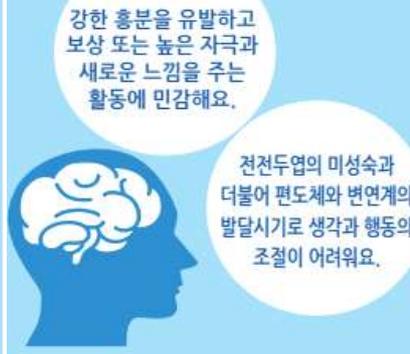
◆ 지도내용: 통학로 알기, 교통수단(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안전한 이용법 알기,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방법, 교통 표지판 등 도로 교통법규 알기, 자동차 안전하게 타기 방법 등

## 12. 정보통신 윤리교육

### 1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란?

- 인터넷·스마트폰의 과도한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 **현저성**: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형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2 청소년기 스마트폰 사용 조절의 어려움

| 1.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발달 특성  | 2. 청소년기 인지적 발달 특성   | 3. 청소년기 뇌 발달 특성   |
|---|---|---|
|  <p>청소년기는 부모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동시에 또래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기 쉬워 적절한 지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p> |  <p>청소년기에는 SNS 댓글, 모바일 메신저 대화 등 온라인 활동 중 다른 사람의 반응에 더 예민해지기 쉽고, 그 결과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p> |  <p>청소년기에는 계획적·이성적 사고, 감정 조절과 관련된 뇌 영역의 발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p> |

### 3 유해 사이트 차단 방법

|        |   |
|--------|---|
| 아이폰    | 1)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을 선택 2) 차단을 선택 3) 차단 활성화를 선택<br>4) 암호 설정 5) 스크롤을 내린 후 차단할 항목 선택 |
| 안드로이드폰 | 각통신사별로 무료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 이용<br>(SKT-T 청소년 안심 서비스 / KT-올레자녀폰 안심 / LG-자녀폰 지킴이)     |

### 4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상담 사이트

- **스마트쉼센터**(<http://www.iapc.or.kr>)
    -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콜: 전화상담(1599-0075), 모바일 상담(m.iapc.or.kr)
  -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https://www.kyci.or.kr>)
    - 청소년상담 전화: 국번 없이 110또는 1388 (\* 인터넷 중독 위기 상담 가능)
    -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채팅상담, 게시판상담, 웹 심리검사 등) 운영
- ※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위해서는 학부모님의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 5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요인     | 항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조절 실패  | 1)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 ①         | ②      | ③   | ④      |
|        | 2)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        | 3)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 현저성    | 4)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        | 5)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        | 6)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 문제적 결과 |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 8)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 9)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 10)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학업 또는 직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 기준점수(40점 최고점)

- 31점 이상: 고위험군/ 23~30점: 잠재적 위험군/ 22점 이하: 일반 사용자군

### ▪ 결과 해석

[고위험군] 스마트폰 과의존 경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기관의 전문적 지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잠재적 위험군]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성을 깨닫고 스스로 조절하고 계획적인 사용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반 사용자군] 스마트폰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 6 스마트폰 과의존 해결 방법

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하고 불필요할 때는 '알람끄기'기능을 활용해요

\* 부모도 함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② 최근 한 달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은 삭제하고, 스마트폰 이용 절제 도우미 앱을 활용해요.

③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장소를 정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요.

\* 예) 잠자기 2시간 전, 수업·식사 시간, 공공장소, 이동 중 등

④ 정해진 시간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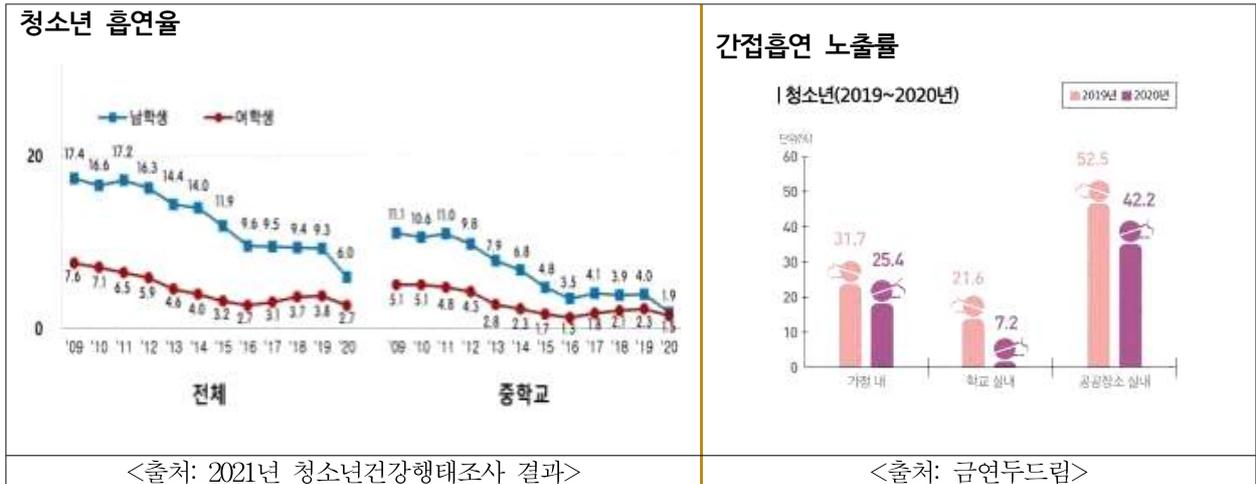
⑤ 일정 시간 사용 후에는 눈 건강 체조와 스트레칭을 해요.

⑥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오프라인 활동(독서, 운동, 취미, 봉사 등)시간을 늘려가요.

## 13. 보건교육(1)- 약물·오남용(흡연,음주,마약류) 예방교육

### 1. 청소년 흡연

#### ○ 청소년 흡연의 실태



#### ○ 담배, 어떤 형태로든 건강에 해롭다.

- 1) 성인에 비해 청소년이 니코틴에 더 민감하고 의존성도 빨리 생기며, 청소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 최근 담배회사들이 내세우는 '위험감소', '냄새 없는', '연기 없는', '깨끗한 대안' 등의 담배 제품은 교묘한 담배 산업전략의 예로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
- 3)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 시기의 흡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여야 함

#### ○ 청소년 흡연의 특성

가. 흡연시작시기 : 중3-고1 사이에 가장 많이 시작 (최근 연령이 점점 낮아짐)

나. 흡연량 : 남학생의 약 80%, 여학생의 80%정도가 하루 10개피 미만

다. 가족흡연 : 흡연자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흡연을 많이 합니다.

라. 학교생활 : 불만족 할수록, 흡연하는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이 길수록, 흡연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흡연을 많이 합니다.

마. 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의 반응 : 부모가 자신의 흡연 여부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인정할 것이라고 인지하는 학생일수록 흡연을 많이 합니다.

바. 부모의 양육태도 : 거부적-통제적이라고 지각할수록(애정적-자율적인 양육태도에 비교할 때) 흡연을 많이 합니다.

사. 정서 : 불안감이 높고 자아 존중도와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흡연을 많이 합니다.

### 2. 가정의 역할

-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간접흡연과 3차 흡연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지 잘 관찰하시고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 ☞ 3차 흡연을 아시나요?

흡연자가 비흡연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흡연을 하고 난 뒤 흡연자의 **몸이나 섬유(옷, 벽지, 카펫 등)에 배인 담배유해물질이 스며져 나와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

-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확인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세요. ☎ 1544-9030

## 3. 술이나 담배를 권하는 친구에게 'NO!'라고 말하기

담배나 술, 약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 명의 친구와 함께 웃으며 놀다가 갑자기 친구들이 담배나 술, 약물을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의 말들을 연습해 봅시다.

- ◆ 고마워. 그러나 나는 마시고 싶지 않아.
- ◆ 속이 메스꺼려 술은 안 마시는 것이 좋겠어.
- ◆ 난 장염 치료중이어서 술은 마실 수 없어.
- ◆ 폐가 약해 담배를 피우면 기침을 심하게 해.
- ◆ 난 오렌지쥬스가 좋아. 쥬스 마실래.
- ◆ 노래나 책 등으로 화제를 바꾼다.
- ◆ 우리 농구하러 가지 않을래?
- ◆ 난 지금 가야 해. 약속이 있어 등.

호기심으로 시작한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약물중독 및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흡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4. 마약류 예방

### ○ 마약류란?

느낌, 생각,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장기간 사용 시  **의존성, 금단증상, 내성**을 갖는다.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 ○ 마약 중독을 막기 위해 기억해야 할 5가지

- ① 친구의 권유나 유혹에는 단호히 거절하기
- ②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 문구에 관심 가지지 않기
- ③ 관련 광고나 SNS 적극 차단하기
- ④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음료, 음식은 절대 먹지 않기
- ⑤ 온라인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약은 사지도, 쓰지도 말기

○ 마약류 부작용

|                  |            |                                       |   |
|------------------|------------|---------------------------------------|---|
| <b>마약성 진통제</b>   | <b>부작용</b> | · 호흡억제, 과민성, 졸음, 구역질, 근육통, 오한, 변비, 환각 |  |
| <b>마약류 식욕억제제</b> | <b>부작용</b> | · 구토, 설사, 우울, 자해, 기억력 감퇴              |  |
| <b>ADHD 치료제</b>  | <b>부작용</b> | · 수면장애, 망상, 혈압 상승, 조울증, 공격성향, 학습효과 저해 |  |



○ 마약류 사용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전문상담지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앙) 02-6929-3192 (전북) 080-232-5112  
☎전국 상담 대표번호 1899-0893

13. 보건교육(2) - 미세먼지 대응 계기교육

1.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확인하기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
- 스마트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 설치: 우리동네 및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확인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7대 행동요령

-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 권고
-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 3.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질병결석 인정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 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질병 결석 인정조건 ※

- 1) 관련서류 제출 :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을 보유자는 사전(학년 초 1회)에 전문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미세먼지와 의 질환과의 관련성 명시)를 학교에 제출( 3.26(수)까지 담임교사 또는 보건실로 직접 제출)
- 2) 고농도 미세먼지 시 : 등교 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에어코리아나, 우리동네 대기정보를 통해 확인
- 3) 사전연락 : 학부모가 학교에 담임교사에게 사전(1교시 수업 시작 전)에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13. 보건교육(3) - 감염병 예방교육

### 1.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 병명                | 초기 증상                      | 등교 중지 기간                                |
|-------------------|----------------------------|---|
| 홍역                | 귀 뒤에서부터 발진, 발열             | 발진 후 5일까지                               |
| 수두                | 발열, 발진, 수포                 |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
| 유행성 이하선염<br>(볼거리) | 발열, 귀밑이 부어오름, 식욕부진         | 부어오른 귀밑이 가라앉을 때까지(약5일)                  |
| 인플루엔자             | 38도 이상 고열, 관절통, 두통, 호흡기 증상 |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열이 내린 후 이틀이 지날 때까지(약 5~7일) |
| 유행성 각결막염          | 안구 충혈, 안구통, 눈부심, 가려움증      | 의사가 등교해도 된다는 진단 (1~2주)                  |
| 코로나19             | 코물,기침,두통,호흡곤란,인후통 등        | 5일간 등교중지 권고                             |

## 2.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결석

- 학생이 타인에게 전염가능한 감염병에 걸려 등교중지를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 합니다.
  - 가.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전화 연락 후 병원에 갑니다.
  - 나.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을 받으면 담임 선생님께 전화 후 집에서 격리 치료를 합니다.
  - 다. 완치되어 등교할 때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진단명과 격리기간 명시 필수)

## 3. 감염병 전파 방지

- 학생이 열이 나거나 기침을 많이 하는 상태로 등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에게 감염병을 전파 시킬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이 발생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면역력을 높여야 하는데 무리하게 등교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해마다 감염병이 유행하고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합니다.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므로 단체생활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여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합니다.

**감염병예방의 첫단계는 올바른 손씻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손 씻기 지도해주세요.(1830 손 씻기)**

|   |  |
|---|--|
|  | 1단계<br>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
|  | 2단계<br>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줍니다.                    |
|  | 3단계<br>손바닥과 손등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               |
|  | 4단계<br>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
|  | 5단계<br>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가락끼리 끼고 문질러 줍니다.          |
|  | 6단계<br>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

## 14. 돌봄학교 운영 계획

### 1. 돌봄학교 프로그램 안내

| 순       | 프로그램명        | 요일 | 운영 시간 |     | 장소   | 주당시수<br>(연간시수) | 수강료 | 교재/재료비              | 비고              |
|---------|--------------|----|-------|-----|------|----------------|-----|---------------------|-----------------|
|         |              |    | 1반    | 교시  |      |                |     |                     |                 |
| 1       | 창의미술         | 월수 | 1반    | 6교시 | 과학실  | 6<br>(252)     |     | 15,000원(매월)         | 교재/재료비수익자<br>부담 |
|         |              |    | 2반    | 7교시 |      |                |     |                     |                 |
|         |              |    | 3반    | 8교시 |      |                |     |                     |                 |
| 2       | 영어(돌봄)       | 월수 | 1반    | 6교시 | 음악실  | 4<br>(168)     |     | 27,000원<br>(학기별)    |                 |
|         |              |    | 2반    | 7교시 |      |                |     |                     |                 |
| 3       | 컴퓨터          | 화목 | 1반    | 6교시 | 컴퓨터실 | 6<br>(252)     |     | 14,000원             |                 |
|         |              |    | 2반    | 7교시 |      |                |     |                     |                 |
|         |              |    | 3반    | 8교시 |      |                |     |                     |                 |
| 4       | 한자           | 화목 | 1반    | 5교시 | 음악실  | 6<br>(252)     |     | 6,000~<br>18,000원   |                 |
|         |              |    | 2반    | 6교시 |      |                |     |                     |                 |
|         |              |    | 3반    | 7교시 |      |                |     |                     |                 |
| 5       | 로봇과학<br>(돌봄) | 화목 | 1반    | 5교시 | 실과실  | 6<br>(252)     |     | 99,000~<br>142,000원 |                 |
|         |              |    | 2반    | 6교시 |      |                |     |                     |                 |
|         |              |    | 3반    | 8교시 |      |                |     |                     |                 |
| 6       | *배드민턴        | 수  | 1반    | 6교시 | 강 당  | 6<br>(252)     |     | -                   |                 |
|         |              |    | 2반    | 7교시 |      |                |     |                     |                 |
|         |              | 금  | 3반    | 6교시 |      |                |     |                     |                 |
|         |              |    | 4반    | 7교시 |      |                |     |                     |                 |
| 7       | **방송댄스       | 수  | 1반    | 6교시 | 다목적실 | 4<br>(168)     |     | -                   |                 |
|         |              |    | 2반    | 7교시 |      |                |     |                     |                 |
|         |              | 금  | 3반    | 6교시 |      |                |     |                     |                 |
|         |              |    | 4반    | 7교시 |      |                |     |                     |                 |
| 8       | 요리           | 월  | 1반    | 6교시 | 실과실  | 3<br>(123)     |     | 24,000원(매월)         |                 |
|         |              |    | 2반    | 7교시 |      |                |     |                     |                 |
|         |              |    | 3반    | 8교시 |      |                |     |                     |                 |
| 9       | 실험과학         | 금  | 1반    | 6교시 | 과학실  | 2<br>(84)      |     | 20,000원(매월)         |                 |
|         |              |    | 2반    | 7교시 |      |                |     |                     |                 |
| 10      | 책놀이          | 월  | 1반    | 6교시 | 다목적실 | 2<br>(84)      |     | -                   |                 |
|         |              |    | 2반    | 7교시 |      |                |     |                     |                 |
| 주당 총 시수 |              |    |       |     |      | 43시간           |     |                     |                 |

※ 돌봄프로그램은 교육비(강사비)가 돌봄예산에서 지급되는 강좌임

※ 교재/재료비는 변경될 수 있음

## 2. 늘봄 프로그램 시간표

| 시간운영               | 월(4)              |            | 화(3)      |                   | 수(4)       |              | 목(3)              |      | 금(3)         |      |
|--------------------|-------------------|------------|-----------|-------------------|------------|--------------|-------------------|------|--------------|------|
|                    | 맞춤형               | 선택형        | 맞춤형       | 선택형               | 맞춤형        | 선택형          | 맞춤형               | 선택형  | 맞춤형          | 선택형  |
| 5교시<br>13:20~14:00 | 정규수업              |            | 한자<br>컴퓨터 |                   | 정규수업       |              | 한자<br>컴퓨터         |      | 정규수업         |      |
| 6교시<br>14:10~14:50 | 창의미술<br>영어<br>책놀이 | 요리         | 한자<br>컴퓨터 | 로봇과학              | 창의미술<br>영어 | 방송댄스<br>배드민턴 | 한자<br>컴퓨터         | 로봇과학 | 방송댄스<br>배드민턴 | 실험과학 |
| 7교시<br>15:00~15:40 | 창의미술<br>영어<br>책놀이 | 요리         |           | 로봇과학<br>컴퓨터<br>한자 | 창의미술<br>영어 | 방송댄스<br>배드민턴 | 컴퓨터<br>한자<br>로봇과학 |      | 방송댄스<br>배드민턴 | 실험과학 |
| 8교시<br>15:50~16:30 |                   | 요리<br>창의미술 |           | 로봇과학              |            | 창의미술<br>배드민턴 |                   | 로봇과학 |              | 배드민턴 |

## 3. 요일별 늘봄학교 특별실 사용 현황

| 장소        | 월    | 화    | 수    | 목    | 금    |
|-----------|------|------|------|------|------|
| 다목적실(2층)  | 책놀이  |      | 방송댄스 |      | 방송댄스 |
| 컴퓨터실(3층)  |      | 컴퓨터  |      | 컴퓨터  |      |
| 음악실(신관2층) | 영어   | 한자   | 영어   | 한자   |      |
| 과학실(1층)   | 창의미술 |      | 창의미술 |      | 실험과학 |
| 실과실(2층)   | 요리   | 로봇과학 |      | 로봇과학 |      |
| 강당        |      |      | 배드민턴 |      | 배드민턴 |